



공중인가
법무법인 비 전

[별지 제33호서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

(전화) 02-6743-7001

등부 2019년 제 37650호

인 증 서

발기인총회의사록

2019년 12월 10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창립사무소에서 발기인총회를 개최하다.



발기인총수	1명	주식총수	600,000주
출석발기인수	1명	출석주식수	600,000주

발기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의 대표이사 정준호는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최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에 관한 심의를 구하다.

제 1 호 의안: 법인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의 법인이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선임방법을 물은 바, 발기인 전원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임하기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법인이사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110111-2359837)

제 2 호 의안: 감독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의 감독이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선임방법을 물은 바, 발기인 전원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임하기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감독이사 도 병 운 (생년월일: 1974년 12월 11일)

감독이사 장 선 균 (생년월일: 1978년 01월 08일)

제 3 호 의안 : 본점 설치장소의 건

의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함이 적당한 뜻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 바, 발기인 전원 이의 없이 승인 가결하다.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과 같이 기명 날인하다.

2019년 12월 10일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삼성동, 골든타워)

의장, 발기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 정준호 (법인도장 날인, 간인)



조 사 보 고 서

본인은 2019년 12월 10일 본 회사 발기인총회에서 감독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

1.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여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00,000주(1주의 액면가액 금500원, 1주의 발행가액 금500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수가 완료되었음이 인정됨.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수 보통주식 600,000주 (2019년 12월 10일 인수완료)
2. 인수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여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600,000주에 대한 주식금액 금300,000,000원이 2019년 12월 10일 에 납입이 완료되었음은 주식회사 국민은행 반포지점에서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됨.
3.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재산인수에 관한 사항,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나 발기인이 받을 보수 등 상법 제290조에 규정하는 사항은 없음.
4. 기타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 되지 아니함.

위와 같이 보고함.

2019년 12월 10일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감독이사 도 병 윤 (도장 날인)

감독이사 장 선 균 (도장 날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 전

[별지 제37호서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

(전화) 02-6743-7001

등부 2019 년	제 37650호
인 증	
위 주식회사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의	
2019년 12월 10일자 발기인총회 -----	
의사록에 대하여 의결권자 발기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의 대리인 임현정 은 -----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	
그 기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	
을 확인 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의 대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	
2019년 12월 10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	
공증담당변호사	
아 래	
1. 공증촉탁서, 2. 진술서, 3. 확인서, 4. 명부, -----	
5. 정관 -----	

최원석

